

# 大韓産業保健協會의 現況



編 輯 室

## 1. 개 요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각사업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 활동을 과학화하여 생산성을 제고 시키고 관계대학과 기술협력으로 산업협동체제하에 학술연구 및 기술진흥을 기하여 산업발전에 적극기여하여 나아가서 국가산업발전에 공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2. 연 혁

1963. 11. 22 산업보건관리자와 대학예방의학 교수 기타관계인사 44명이 국립보건원강당에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가) 전문 8장 35조의 정관을 승인.

나) 초대임원 14명을 선출.

다) 사무실을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에 돌것을 의결(사무실은 그후 현재 종로구 경운동 84-4로 이전하였음)

※ 초대 임원 명단

崔永泰(會長) · 曹圭常(副會長) · 桂麟敎(理事)  
玄圭煥(理事) · 李暎根(理事) · 盧潤模(理事) · 金永韶(理事) · 朴鳳洙(理事) · 趙大喆(理事) · 姜舜求(理事) · 元世載(理事) · 具弼會(理事) · 金忠雄(監事) · 朴時允(監事)

1964. 7. 9 보사부 제 667 호로 인가를 얻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사단법인체로 발족함.

1964. 10. 14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 설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정방법, 요양방법, 장애등급판정방법, 수가기준의 설치방법등을 연구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설치함.

1964. 10. 22 진폐심사위원회 설치

1965. 3. 27 건강관리위원회 설치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들의 기술지도와 지원을 위하여 설치함.

1965. 10. 21 직업병클리닉 설치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진폐증 및 각종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까지. (1972. 2. 28 까지 운영)

1966. 3. 27 지부결정

산업보건사업을 전국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지역의 산업보건관계자들로 지부를 결정함.

1968. 8. 9 시범지역산업보건서비스센터설치 중소기업모산업장의 조밀지역인 영등포 지역의 근로자와 직업환경개선지도를 위하여 설립함

1971. 2. 1 시장상가(청계) 근로자복지의원 설립 운영.

청계시장내의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 관리와 영세근로자에게 진료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영함

1971. 4. 1 영등포,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등 6개소에 근로자복지의원 설립

1971. 9. 7 훈련교학위원회구성

1972. 1. 10 학술 위원회구성

1972. 4. 1 마산수출자유지역내에 근로자복지의원 개설.

1973. 1. 5. 건강관리위원회구성

1973. 10. 8 마산복지의원을 마산산업보건 서비스센터로 개편

1973. 12. 31 복지의원통합.

영등포복지의원은 영등포센타에, 대전 복지의원은 광주복지의원에, 대구복지의원은 부산복지의원에 각각 통합하여 운영함.

1974. 3. 19 마산센타운영위원회구성

1974. 9. 4 복지의원(청계, 인천, 광주, 부산)을 산업보건서비스센터로 개편하여 산업 보건에 관한 조사및 연구사업을 수행케함.

1974. 4. 14 청계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1974. 7. 19 본협회사업을 과학화하고 기업체의 산업보건사업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건센터를 지원할 목적으로 전국각대학과 센터지원협정을 체결함. (협정을 체결한 대학: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부산의대, 경북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계 7개의 대)

1975. 2. 25 센터지원위원회 설치 및 센터운영위원회 규정제정, 학술위원회보강.

1975. 9. 16 직업병위원회 환경위생위원회구성.

### 3. 협회 사업

1) 사업보건사업의 기구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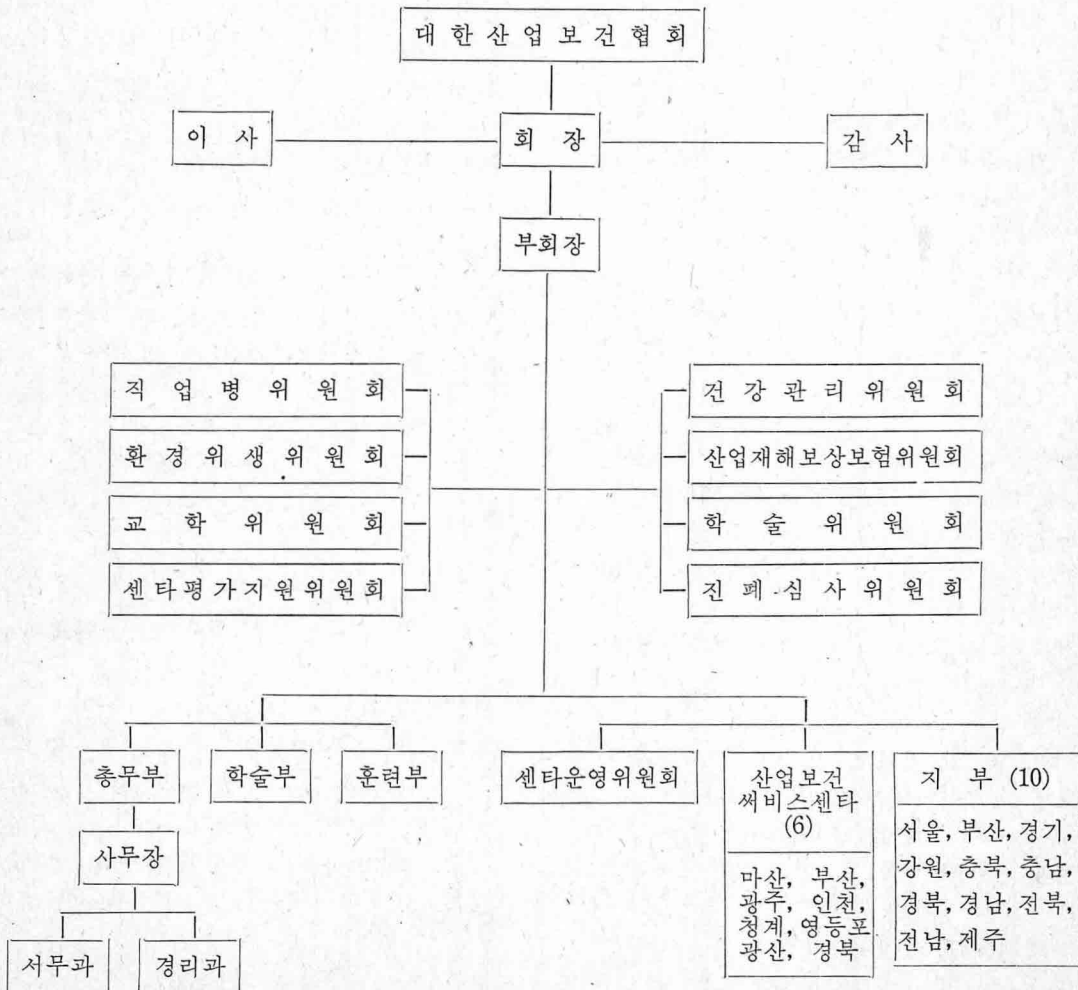
2) 사업장의 작업중 유해한 환경조건을 분석 평가하고 연구 또는 개선지도로써 생산성제고를 개발.

3)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질병, 직업병, 또는 직업성질병의 역학적조사진단연구 및 개선지도와 예방대책지도 또는 지원에 관한사업.

4) 사업장의 작업공정을 정밀분석하여 작업기능을 능률화시키는동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조

### 4. 기 구

기 구 표



사연구, 또는 지도.

5) 사업장의 작업심리를 조사분석하고 조정토록 하기위한 조사, 진단, 연구, 또는 지도에 관한사업.

6) 본회 또는 센터에서 학술회 또는 세미나등을 개최하며 기관지발행.

7) 산업보건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발전에 필요한 기준, 평가, 소견, 또는 문제 분석등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

8) 사업주,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요원 기타 관계인사에게 산업보건사업의 계몽 또는 훈련.

9) 사업보건사업에 종사하는 회원 및 관계요원의 활동지원.

10) 국제적산업보건관계기구 또는 단체에 참여하고 국제전문회의에 참가하여 국제적기여에 노력하는 사업

11) 필요에 따라 산업보건에서 문제되는 질병 및 직업병을 실비로서 진료의 편의도모

12) 기타 산업보건에 관련된 사업의 발전에 노력.

### 5. 임 원

회 장	최영태	
부회장	조규상	가톨릭의대학장
이 사	정규철	중앙의대교수
"	권숙표	연세의대교수
"	문영한	연세의대교수
"	박형중	보건개발연구원장
"	노인규	보건대학원부교수
"	차철환	고려의대교수
"	이성관	경북의대교수
"	김돈균	부산의대교수
"	송인현	전남의대교수
"	김영홍	전·서울시의사회회장
"	장운섭	새서울의원장
"	이우영	부산한독병원장
"	이병직	수원도립병원장
"	윤부병	전북이리호남의원장
"	김진하	한국복지공사 장성병원장
"	김응남	마산센터소장
감 사	원세재	경성방직의무실장
"	윤명조	고려대학교부교수

### 6. 지부 현황

지부	지부장	지부 소재지
서울지부	김옥천	서울, 중구을지로6가 17-410 동화시장 410호
부산지부	이우영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870-7 및 8호
경기지부	이병직	경기도, 수원시 신평동 수원도립병원
강원지부	김진하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장성병원
충북지부	이종욱	충북, 청주시 내덕동 196 주성의원
충남지부	심운택	충남, 대전시 은행동 138 제일엑스선과
전북지부	윤부병	전북, 이리시 창인동 1가 413 호남의원
전남제주지부	김병우	전남, 광주시 학동 8 전남의대
경북지부	김두희	경북, 대구시 중구 동인동 경북의대
경남지부	김응남	경남, 마산시 양덕동 마산산업보건서비스센터

### 7. 산업보건 서비스센터 현황

서울청계	중구을지로 6가 17-410 동화시장 410	센터	25-8582, 소장:조정식
영등포	영등포구 당산동 121-81 어머니회관	센터	4층 63-9969, 소장:김성천
경기센터	인천시중구서린동1가 14 3-5065	소장	:박시윤
광주센터	광주시서구유동 109-9	전화	3-5465
부산센터	부산진구 범일동 870-7 및 8	범 7호	광장(범천로타리) 68-8178·66-4268,
		소장	:이채언
마산센터	마산시 양덕동 975 5-2965·5-2677,	소장	:김응남
광산센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고한 10리	전화	2404, 소장:이수일
경북센터	대구시 중구 동인동 2가 경북의대구내	전화	4-1141~49, 소장:이영호

### 8. 협회 활동 상황

본협회는 중국의 목적인 작업인력의 과학적 활

용으로

1. 생산성 제고 및 품질향상
2. 근로자 사기양상으로 노사일체감 성취
3. 인간공학개발로 능률적작업체제 확립
4. 유해유독작업환경검출과 원인제거로 쾌적한 작업풍토조성으로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5. 전기의 작업여건개선으로 기능의 숙련을 촉진시키며 숙련공의 소모현상을 제거한다.
6. 근로인적자원을 귀중한 유효인력으로 전환 활용하여 경제근대화에 기여한다.

이상의 결실을 얻기위하여 본협회는 7개의 보건센터(산업보건조사연구소성격)를 1972년부터 설치하고 매년 그 사업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건강관리, 유해환경조사 및 개선, 인간공학사업개발, 작업심리사업개발로 작업사기 및 의욕의 향상을 도모하며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계몽선전등의 사업을 적극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대학교수와 기업체의 문제점을 조사 또는 연구하며 이에는 기업체의 책임 간부와 공동검토 및 연구로 개발하고 있다. (별첨 센터의 활동표 참조)

그 이유로는

1. 전문가들로서 협회이사회 및 센터의 기구가 구성되어있고,
2. 학습적으로 과학적 뒷받침이 관련 대학과 서면협정(별첨 협정서 참조)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체제로 갖춘 사실.
3. 센터의 사업내용이 산업보건사업의 각전문분야로 포괄적 내용으로 구성된 점.
4. 센터사업의 평가교수위원회가 있어 고도의 학술전문가들의 올바른 평가를 얻어 사업이 과학적 토대위에서 수행되는 일.
5. 기업체의 기사 또는 간부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긴밀히 유대를 갖고 검토 개선할 수 있는 점.

이상 몇가지 이유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지않고 오로지 본협회만의 구상에의거 시도추진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보건센터는 완전한 과학자료와 과학방법으로 기업체의 유해유독한 환경개선 능률적 작업의 제도화(인

간공학의 응용), 작업의욕과 사기의 고무 및 건전한 건강관리의 과학적지도등을 개발추진하는 바 여기에 촉탁보건관리자와 전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요원에게 참여케하여 기업체내에서 개선지도업무를 담당케함으로서 보건관리를 과학화하고 그 결과로 사기향상, 생산성증대, 노사일체감 및 기업근대화를 기하게될 것이다. 대통령각하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정방침을 밝히는 가운데서 금년에는 기필코 기업주는 작업환경의 개선으로 사기의 진작을 도모하여 능률적생산증대로 기업근대화를 기하고 그만큼 복지시설과 노임의 확충을 기하도록 강조한 바 있다. 기업주제위는 작업인력의 과학적 활용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시고 본협회센터의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여 주시는데 각별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협 정 서 (例)

대한 산업보건협회와 경북 대학교 의과대학은 경북일원에 걸친 산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경북산업보건 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단, 평의상 대한산업 보건협회를 “갑”이라 칭하고 경북 대학교 의과대학을 “을”이라 칭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정의 체결 목적은 “갑”이 설치 운영하는 센터의 목표인 지역기업체의 근로자 보호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보건 관리에 “을”이 기술적 학술적 및 기타를 제공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시설물 제공) “갑”은 본 센터에 “을”이 기술적, 학술적, 및 기타를 제공지원함에 따라 필요한 제반 시설물 일체를 “을”에게 제공한다.

제 3 조 (운영위원회구성) “갑”은 센터의 사업운영위원회에 “을”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시킨다.

제 4 조 (경비부담) “갑”은 센터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함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타를 “을”이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 일체를

- “갑”의 부담으로 “을”에게 지불한다.
- 제 5조 (편의제공) “갑”은 센타에서 “을”이 실시하는 연구, 조사 및 학생실험실습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 제 6조 (조사결과 통고및발표) “을”은 센타내에서 실시한 제반 조사결과를 “갑”에게 통고하며, “갑” “을”협의하에 공동 또는 단독으로 발표할 수 있다. 단, 사업내용의 발표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7조 (운영협조) “갑”과 “을”은 본 센타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쌍방이 최대한으로 협조한다.
- 제 8조 (협정기간) (1) 본협정은 유효 기간을 단 2개년간(76. 2. .부터 78. 2. .까지)으로 하여, 협정체결 만료일이 경과되어도 쌍방간에 해약 통고가 없는 한 본 협정 체결 기간이 단 1개년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2) “갑” “을” 쌍방이 특별한 사정으로 본

협정을 해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6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 9조 (기타) 본 협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쌍방이 기명 날인한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976. 2. 21

“갑”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9-4  
대한 산업 보건협회  
회장 최 영 태

“을” 경상북도 대구시  
경북 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주 영 은

센타의 활동표

